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9,400,000	11,682,000
일반회계	377,200,000	11,316,000
특별회계	12,200,000	366,000
기타특별회계	12,200,000	366,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966,000	58,9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49,000	58,470
저소득주민거안정기금특별회계	781,000	23,4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41,000	43,2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62,000	16,86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817,000	84,510
치수사업특별회계	2,581,000	77,430
기반시설특별회계	103,000	3,0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64,37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